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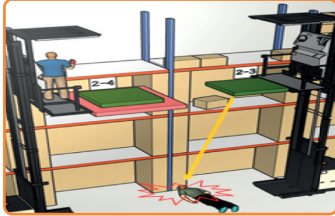
오더피커 플랫폼

에서 추락



재해개요

발생형태	부상 정도	연령	동종경력
추락	사망 1명	36세	



'22. 3. 00.(금) 15:00경 용인 소재 물류창고에서 오더피커를 이용하여 적재대 4단에 제품상자를 적재하던 중 작업대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

작업상황 - 불안정한 행동

정상

정면이 개방되어 있는 오더피커 플랫폼에서 작업시 안전대 및 안전모 착용

비정상

정면이 개방되어 추락위험이 있는 오더피커 플랫폼에서 작업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안전대 및 안전모 미착용
 → 헤드가드에 안전대 부착설비가 장착되어 있으며 추락시 줄줄이 자동적으로 수축되는 줄 장치인 안전블럭이 설치 되어 있으나 미사용

발생원인

- ▶ **직접원인** **안전조치**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대 착용 등의 안전조치 미준수
- ▶ **기여요인** **영문표기** 오더피커 제조사에서 제시한 안전에 관한 주의사항이 영문으로 표기 되어 있어 근로자 인지가 어려움
- 관리감독** 작업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개인보호구 미착용 및 작업상황에 따른 임의적 판단 통제 미실시
- 위험요인** 오더피커를 사용하는 작업시 위험요인 통제하기 위한 대책 미수립

예방대책

- ▶ **보호구 착용 및 탑승제한 조치 철저**
 - 오더피커는 조종석이 포크와 함께 일정 높이 이상 상승하는 설비로 추락 위험 방지를 위해 안전모와 안전대(그네식)를 착용하고 안전대 부착설비에 고리를 체결 후 작업 실시
 - 조정석이 아닌 장소인 포크와 팔레트에는 추락방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없이 근로자 탑승금지
- ▶ **해당 작업 위험 요인에 따른 안전대책 및 작업방법 마련**
 - 추락, 낙하, 전도,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과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 내용을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성된 계획에 따라 작업 실시

- 추락위험방지 및 탑승제한 조치 철저
 - 작업계획서 작성 후 그에 따른 작업 실시

- 위험성평가 및 관리감독 철저

* 본 OPS는 동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작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이 재해 발생 상황과 다를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